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허위사실 유포금지 규정 신설〉

■ 신동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56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 춘 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동욱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25.
3. 회부연월일 : 2026.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여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임.

그러나 천안함 피격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책임 주체 등에 관하여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존 장병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건 관련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존 장병 및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장병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허위사실 유포금지 규정 신설

개정안은 ①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②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③ 그 밖의 강의·간담회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신설).

또한 개정안은 이 행위들이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또는 인쇄물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

	<u>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u>
--	--

- 천안함 피격과 관련하여 북한에 의한 피격이 아니라 암초에 좌초되었다거나,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 대하여 경계에 실패한 패잔병으로 모욕하는 등 천안함 피격 사건을 부인·비방·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천안함 희생자와 생존 장병 및 그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더 이상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무분별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방지함으로써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명예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개정(2021. 1. 5.)한 바 있고, 처벌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처벌규정은 동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며,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타 법률에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별도의 처벌 규정 신설이 필요한 것인지는 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방지함으로써 생존장병 등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관련 입법례와 「형법」 등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제22대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2024년 9월 23일)에서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규정된 해당 벌칙 조항을 심사한 결과, 향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고 신속히 동 법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해당 벌칙을 삭제하기로 여야합의함으로써, 동 특별법안을 수정가결하여 신속히 제정하였음(2024년 12월 13일 공포).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 명예훼손 관련 일반규정

- 「형법」 제307조 ~ 제309조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천안함피해지원법」 구자근 위원 최초발의안('24.6.28.) 벌칙 규정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비방·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

가.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나.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다. 그 밖에 공공연하게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 현행 「천안함피해지원법」('24. 12. 3. 공포 / '25. 6. 4. 시행)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제정 내용
제2조	(정의)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정의
제6조	(의료지원)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제7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지원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제8조	(취업지원) 국가는 생존 장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업지원 실시